

공무국외여행시 준수사항

1. 기본 방향

- 고환율과 국가경제 어려움 극복을 위해 공직자가 출선수범하여 불필요한 집행을 줄이고, 외유성 국외여행을 자제
- 국내에서 여행목적 달성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국외여행은 원칙적으로 금지
- 필수불가결한 공무국외여행의 경우 최소인원으로·최단기간에·최소경비로·꼭 필요한 국가만을 방문

2. 준수 사항

가. 공무국외여행 前 준수사항

- ① 방문국가는 여행목적 수행에 한정하여 계획 수립
 - 출장목적에 맞는 국가를 한정하여 방문하고, 인접국가 경유 여행 지양
 - 방문국가에 대해서는 사전에 타 자치단체 등에서 방문실적 유무를 파악하여 중복방문 지양
- ② 여행인원 최소화
 - 출장시에는 출장목적에 맞는 필요 최소한의 인원으로 한정
 - 여행 목적과 관련 적은 부서직원을 포함하거나, 수행직원을 불필요하게 대동하는 국외출장 지양
- ③ 직무관련 민간기관에 부담주는 행위 금지
 - 외부 용역시 용역과업에 국외여행을 포함하거나, 외부기관에 여행 경비를 전가하여 부담을 주는 여행금지
- ④ 여행경비는 최소한으로 편성
 - 여행계획 수립 시 교통·숙박·현지식당 등에서 과다사용 방지

나. 공무국외여행 中 준수사항

- ① 현지자료 요청시에는 미리 목록을 정리하여 꼭 필요한 자료만 요청, 과다하게 자료를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
- ② 국외여행 중 긴급사항 또는 특수사항 발생시 재외공관의 협조를 받아 허가권자에게 즉시 보고
- ③ 현지 규범·관습·공중도덕 등을 지키며, 음주 등으로 공무원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유의
- ④ 호화 또는 고가 외국물품을 구입하여 빈축을 사는 행위 지양

다. 공무국외여행 後 준수사항

- ① 출장비용 정산 1주일 이내(준비금은 증빙서류 첨부하여 실비 정산)
 - 준비금 실비 지급대상 항목(4개항목)
 - : 예방접종, 비자발급, 여행자 보험가입, 풍토병예방약 구입
- ② 귀국보고서 및 항공마일리지 적립 신고